# 이사회 운영규정

시행일: 2023 년 7월 20일

주식회사 동성케미컬

## 제·개정 이력

제·개정 이력	비고
2008.5.1. 제정	
2011.11.1. 개정	
2016.9.1. 개정	
2018.7.1. 개정	
2021.4.1. 개정	
2022.7.1. 개정	전문위원회 신설
2023.7.20 개정	이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신설

### <u>목 차</u>

#### 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제 2 조 (적용범위)

제 3 조 (권한)

#### 제 2 장 구성

제 4 조 (구성)

제 5 조 (의장)

#### 제 3 장 회의

제 6 조 (종류)

제 7 조 (소집권자)

제 8 조 (소집절차)

제 9 조 (결의방법)

제 10 조 (부의사항)

제 10 조의 2 (이사회 내 위원회)

제 10 조의 3 (이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)

제 11 조 (권한위임)

제 12 조 (감사의 출석)

제 13 조 (관계인의 출석)

제 14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제 15 조 (의사록)

제 16 조 (간사)

제 17 조 (기타)

#### 부 칙

#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동성케미컬(이하'회사'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## 제2장 구 성

#### 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 5 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3장 회 의

#### 제 6 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. 단, 부의사항 또는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#### 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

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한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#### 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서면, 구두, 전화, 팩스. 전자메일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# 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 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.

#### 제 10 조 (부의사항 및 보고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주주총회부의안건
   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(2)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(3) 정관의 변경
    - (4) 자본의 감소 (주식소각 포함)
    - (5)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·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    - (6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   - (7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   - (8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    - (9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    - (10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    - (11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
    - (12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
- (13)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
- (14)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5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- 2. 이사회 및 경영에 관한 사항
  - (1)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승인
  - (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(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 - (4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  - (6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 - (7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  - (8) 국내외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  - (9) 사업구조조정
  - (10) 임원 보수 기준
  - (11) 기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
- 3. 재무에 관한 사항
  - (1) 20 억원을 초과하는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
  - (2) 20 억원을 초과하는 신규시설 투자, 시설 증설, 별도 공장의 신설
  - (3) 20 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
  - (4) 20 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 (단, 금융거래는 같은 호 (5)목에 의한다)
  - (5) 중요한 금융거래
    - 1) 50 억원을 초과하는 차입계약

다만, 기존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차입 및 기 계약된 차입금 한도 내 집행은 제외한다.

- 2) 20 억원을 초과하는 고위험 금융상품계약
  - 다만,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 및 기 집행된 계약 한도 내 집행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3) 20 억원을 초과하는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거래 계약
- 4) 20 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5) 중요한 금융 계약에 대한 사항 중 1)~4)에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한 20 억원을 초과하는 기타의 금융 계약
- (6) 결손의 처분
- (7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8) 신주의 발행
- (9) 사채(BW, CB 등 주식연계사채 포함)의 모집, 발행
- (10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1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 및 소각
- (12)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

- (13)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
- 4. 이사에 관한 사항
  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 - (2)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 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 (자회사 및 관계회사 제외)
- 5. 기 타
  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
  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 - (3)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
  - (4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가 보고를 요청한 경우
 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  - 3.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  - 4.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평가 보고
  - 5. 기부, 찬조의 연간 계획 수립 및 집행 실적 보고
  - 6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# 제 10 조의 2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제 10 조의 3(이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)

①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 아닌 임직원, 내·외부 관계자 등에게 이사회 출석, 관련 자료의 제출,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③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,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7.20>

#### 제 11 조(권한위임)

이사회는 법령, 정관 및 본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본다.

#### 제 12 조(감사의 출석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## 제 13 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 14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 15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# 제 16 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의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제 17 조 (기타)

본 이사회 운영규정이 정관 또는 유관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에 반하거나 또는 충돌이 생기는 경우 정관 또는 유관법규가 우선한다.

#### 부 칙 (2023.7.20.)

#### 제 1 조 (시행일)

본 이사회 운영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